

공청회 고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DHCR)가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One Bowling Green, New York, New York 10004에 Alexander Hamilton U.S. Custom House의 U.S. Custom House 강당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 공청회는 규제 당사자 및 관련 일반인에게 뉴욕시 임대료 안정화 규정(New York City Rent Stabilization Code) 및 뉴욕시 임대료 및 퇴거 규정(New York City Rent and Eviction Regulations)에 대한 DHCR의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개정될 각 규정의 섹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9 NYCRR §2200.1; §2200.2; §2200.14; §2202.1; §2202.2; §2202.4; §2202.13; §2202.16; §2202.25; §2202.27; §2203.4; §2204.3; §2204.4; §2204.5; §2204.6; §2206.7; §2208.9; §2211.2; §2211.3; §2211.4; §2211.5; §2211.6; §2211.7; §2211.8 and 9 NYCRR §2520.1; §2520.6(c), (d), (f), (k), §2520.7; §2520.8; §2520.9; §2520.11 (c),(e), (f), (j), (k), (p), (r),(s), (u); §2520.12; §2521.1 (b), (c), (d), (e), (g), (i); §2521.1 (m), (n); §2521.2 (a), (c) (d), (e); 2522.2; 2522.3 (a), (c), (e), (f); §2522.4 (a), (b), (d), (e),(g); §2522.5(a), (d), (f), (g); 2522.6 (b), §2522.7; §2522.8; §2522.9 (b); §2523.1; §2523.4 (a), (b), (f), (g); §2523.5 (b), (f); §2523.7 (b), (c); §2523.8; §2524.2 (e), §2524.4(a), (b) (c); §2524.5 (a), (b); §2525.2(b); §2525.3 (a); §2525.5; §2525.6(e),(g); §2525.7; §2526.1; §2527.2; §2527.3(a); §2527.4; §2527.5 (j), (k); §2527.5 (l), (m); §2527.7; §2527.9(a), (e); §2528.2(a)(7); §2528.4(a); §2529.6; §2529.10; §2529.12; §2531.1; §2531.2; §2531.3; §2531.4; §2531.5; §2531.6; §2531.7; §2531.8; §2531.9. 이 제안된 개정안은 규제 완화, 과다 청구, 실질적 회생, 철거, 승계권, 개별 아파트 개선, 주요 자본 개선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질적 및 절차적 조항의 수정을 반영한 것으로, 2019년 주택 안정성 및 세입자 보호법(The 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 2019년 법률 36장("HSTPA"), 2019년 법률 39장, DHCR의 행정 경험, 2014년 이 규칙에 대한 마지막 주요 개정 이후에 결정된 법원 사건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대변인 사전 등록을 권장합니다. 사전 등록을 원할 경우 Michael Berrios 사무소에 (718) 262-4816으로 전화를 걸어 공청회에서 발언을 희망하는 시간과 대표자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예약한 사전 등록된 대변인의 발언은 대략 그 시간에 듣게 됩니다. 공청회 당일 등록한 대변인의 발언은 사전 등록된 대변인이 이미 예약하지 않은 시간에 등록 순서대로 듣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발언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됩니다. 대변인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DHCR 담당자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청회는 이 모임에 출석한 등록된 모든 대변인들의 발언을 다 듣고 난 후에 종료됩니다.

DHCR은 공청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된 서면 증언도 받습니다. 제출물은 사전에 Michael Berrios,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92-31 Union Hall Street, 6th Floor, Jamaica, New York, 11433 (718) 262-4816 또는 이메일로도 2022RentRegulationComments@hcr.ny.gov에 보낼 수 있습니다.